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312호 2021. 7. 12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조 례

- 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(예천군 조례 제2448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7월 12일

예 천 군 수

예천군 조례 제2448호

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실·과·팀장급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실·과·팀장”을 “실·과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읍·면장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천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확립하고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

◇주요내용

가. 관계공무원 범위 변경(제2조제2호 및 제4호)

○ 실·과·팀장 → 실·과장

나. 관계공무원 범위 신설(제2조제5호)

○ 읍·면장